



이승만정권 초기의 사형제도 운용에 대한 평가* : 제주4.3사건 및 여순사건을 중심으로

이 덕 인**

| 국문 요약 |

일제의 식민지배와 미군정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자주국가 건설의 서막을 열어야 했던 제1공화국 이승만정권은 냉전의 세계질서 속에서 남북 분단이 예견되는 사정 아래 가장 시급한 국정 방향을 체제 유지에 둘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열악한 정치적 기반을 조속히 정비하려면 내부적으로 통치권력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세력을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전반기 한국사회는 반공주의를 체제 유지의 사활을 건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던 만큼 조직적으로 무장화되어 가는 좌익세력의 준동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혹한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하려 했던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도에 따라 이승만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한편으로 법외적 학살을 동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합법을 가정한 형식적인 사법절차에 따라 사법살인도 불사했던 것이다.

이 연구는 특히 후자에 해당하는 사법살인을 실제적 측면에서 정당화해 주었던 사형규정 범죄구성요건과 절차적 측면에서 손쉽게 사형선고를 남용할 수 있었던 형사재판상 특례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어떠한 측면에 의한 것이었던 헌법이 존재하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규범체계에서는 전혀 허용하기 어려운 위헌적이면서 위법한 요소들이 당시의 사형제도 운용에 내재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전제 아래 정부수립 이후 1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났던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하여 그 사후 처리에 있어서 특히 군법회의에 의한 사형선고와 그에 따른 집행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국가사법작용의 일부가 아니라 사법살인에 지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승만정권 초기에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폭력으로서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에 관련된 사형 또한 법외적 학살과 동일한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국가는 더 이상 이를 불행했지만 불가피했던 과거사로 회피해서는 안 되며 당시의 사형제도 운용과 관련된 객관적 평가와 책임 있는 해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 여순사건의 사형, 제주4.3사건의 사형.

< 차 례 >

- I. 문제의 제기
- II. 사형규정 범죄구성요건과 형사재판의 특례
- III. 정부수립 직후 비상사태와 사형제도
- IV. 맺음말

I. 문제의 제기

청년기 배재학당에서 수학하면서 법치주의원칙 아래 정치적 자유 등에 눈뜨게 되었던 이승만은 1898년 10월, 급진개화세력이 입헌군주제를 수립하려는 쿠데타 음모에 가담하였으나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도피하던 중 이듬해 1월 9일, 체포된다. 이후 유죄선고를 받고 한성감옥에 수감도중 탈옥을 시도하다가 붙잡히는데, 후일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던 권력을 지칭하며 “나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을 풀어대는 그들은 격분한 동물과 같았다”고 회고한 바 있다.¹⁾ 당시 언론은 이승만의 사형선고를 기정사실화하였고,²⁾ 그는 사형집행에 대한 극한의 두려움에 떨며 항시 유서를 수중에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³⁾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1017744].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계열 교수 / 법학박사.

(투고일자: 2014.01.27, 심사일자: 2014.02.28, 게재확정일자: 2014.03.12.)

- 1) 유명익, 젊은 날의 이승만, *한성감옥생활(1899-1904)과 옥중잡기 연구*, 2002, 17면 이하 참조.
- 2) 황성신문 1899년 3월 18일자 참조.
- 3) 일성록 1899년 6월 20일자[책번호 12816_0459]; 평리원 재판장 홍종우가 작성한 질품서(質稟書)에는 이승만의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고종황제 폐위음모 가담혐의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문에 부치고 탈옥미수죄만을 적용하되 이조차도 중범으로 처리되어 사형은 선고되지 아니하였다. 이승만에게 적용된 범죄구성요건은 대명률(大明律) 포망편(捕亡編)의 범죄도주거포구인지질상이상자률(犯罪逃走拒捕毆人至折傷以上者律)의 위종자률(爲從者律)이며, 구체적인 양형은 태형(笞刑) 100대와 종신징역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품보(을) 0019책, 질품서 제2호[서울대 규장각 청구기호: 17279-奎], 25~28

그러나 이렇듯 대한제국시기의 정치범으로서 생사를 넘나든 바 있던 이 노회찬 권력자는 초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자 자신이 몸소 경험한 과거의 기억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자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역대 정권이 집행한 사형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사형을 집행했던 불명예를 안게 된다. 몇 해 전 법무부는 건국 이래 사형집행이 920건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자료는 이승만정권의 사형집행이 335건으로 414건의 박정희정권보다 적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을 축소·왜곡한 것이며 이를 반박하는 충분한 증거들이 지나간 동면에서 하나 둘 깨어나고 있다. 따라서 그에게는 ‘건국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관용어처럼 자주 사용되어 왔으나 그보다는 정부수립 직후에 국한하더라도 법외의 학살과 형식적 사법절차에 근거한 사법살인을 모두 활용했던 전체적 경찰국가의 집권자였다는 평가가 더욱 정확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그 연장선상에서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저돌적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 생명권에 근거한 인간존엄의 가치를 무시했던 이승만정권이 어떻게 사형을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남용하였는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승만정권 초기의 사형을 규정한 범죄구성요건들과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특례들을 살펴보고, 특히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이라는 비상사태의 사법처리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형선고와 집행의 내용을 관찰해 보기로 한다.

II. 사형규정 범죄구성요건과 형사재판의 특례

1. 개요

해방 후 1953년 9월 18일, 제정형법(법률 제293호)이 공포되어 10월 3일부터 시행되기 전까지 일제강점기에 통용된 (구)형법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형사기본법이었다. 그러나 공안범죄를 비롯한 일반형사사건의 처리에는 식민 치하의 일부 법령과 미군정의 법령,⁴⁾ 그리고 신생국가의 이름 아래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타

면, 86면 각 참조.

개하고자 제정된 형사특별법⁵⁾들이 우선 적용되었는데, 사형선고 또한 (구)형법보다는 이와 같은 형사특별법에 의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런데 제1공화국 초기의 형사특별법들은 공통적으로 엄형주의를 표방하고 있었고, 형사재판은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아울러 형사절차 또한 현대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단심에 의하거나 민간인을 군사법정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래에서는 제주4.3사건 및 여순사건 당시 사형이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의 내용과 형사재판상 특례, 그리고 사형선고 및 집행의 규모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2. 사형을 규정한 범죄구성요건

1) 국가보안법

(1) 체제유지규범의 필요성

1948년 4월 3일 이후 제주지역에서의 폭동과 10월 19일, 여수순천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반란 및 11월 2일, 대구 주둔 제6연대의 반란 등은 좌익세력의 활동이 이전과 다르게 조직적이면서 무장화되었기 때문에 이승만정권으로 하여금 이를 척결하지 못하면 권력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각성시키게 되고, 이것이 결국 국가보안법을 서둘러 제정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⁶⁾

4) 예컨대 1945년 10월 30일, 미군정이 제정 공포한 법령 제19호의 경우 ‘폭리에 대한 보호’(제3조)와 관련하여 법정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실무상 최저 벌금 1만원 이상,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법령 제208호(항명죄와 해적죄, 가타범죄)에도 사형이 규정되어 있었다.

5) 건국 이후 사형을 규정한 최초의 형사특별법은 1948년 9월 22일, 공포된 ‘반민족행위처벌법(법률 제3호)’이다. 이 법률에는 한일병합에 적극 협력한 자, 주권침해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고(제1조), 일본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에 대해서도 사형선택이 가능하였으나(제3조), 1950년 6월로 규정된 시효기간 단축 법안이 통과되면서 폐지된다. 이후 1948년 10월 9일, 공포된 ‘양곡매입법(법률 제7호)’에도 정부의 허가 없이 양곡을 국외에 유통시키는 자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제10조), 1950년 2월 16일, 폐지되어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당초 ‘내란행위특별조치법’으로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제주4.3사건에서 여순사건으로 이어지는 급박한 정치상황의 전개는 내란뿐 아니라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좌익결사까지도 폭넓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그 처벌범위를 확대하게 된다.⁷⁾ 이에 따라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 구성요건 역시 수정한 국가보안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법률은 제정당시부터 식민강점기의 치안유지법과 유사한 비민주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남용과 이에 따른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우려되었고, 나아가 남북통일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대두되지만,⁸⁾ 일부 자구만을 수정한 채 11월 20일, 법률 제10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 법정형 상향의 의도

그런데 제정 국가보안법(1948)에는 체제전복 행위 등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었으나 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85호로 전문 개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형이 추가되었다.⁹⁾ 즉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하는 자 또는 그 결사 또는 집단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가 수괴간부인 경우(제1조 제1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제1조 제2호), 제1조에 규정한 결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 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가 수괴간부인 경우(제2조 제1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제2조 제2호) 등에 대하여 상대적 사형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¹⁰⁾ 이와 같이 개정 국가보안법(1949)은 사형 등 중형을 포함한 실

-
- 6) 제정의 일반적 배경과 직접적 계기에 대해서는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1, 2004, 77~80면.
 7) 이승만정권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반민법에 대응하고자 이와 같은 체제유지규범을 강구하게 되었다는 견해로는 변동명, “제1공화국 초기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개정”,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 제1호, 2013, 91면 이하 참조.
 8) 박원순, 앞의 책, 86~91면 참조.
 9) 법정최고형을 사형으로 높인 이유를 밝힌 당시 법무부장관 권승렬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헌국회 제5회 제56차 본회의 회의록,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국회사무처, 1949. 12. 2, 1382면.
 10) (구)형법상 내란죄에는 당연히 사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내란죄에 이르기 전 단계를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형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제정 국가보안법은 법정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시 국회법사위원장 백관수의 설명(제헌국회 제1회 제99차 본회의 회의록, 국가보안법안 제1독회, 국회사무처, 1948. 11.

체적 요소와 통상의 형사재판을 배제하는 절차적 요소를 구비하면서 이외에도 미군정이 폐지했던 예비검속에 의한 보도규정을 부활시킨 행정적 요소까지 포괄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정권은 공안사건의 빈발 및 그에 따른 재판의 폭주, 그리고 수감시설 부족의 문제를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결하려는 노력을 간단히 포기해 버린 채, 엄형으로 무장한 형벌규범에만 의존하려 했으며 개정 국가보안법은 그 서막을 여는 전주곡이었다.¹¹⁾

2)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

(1) 군사규범의 민간인에 대한 적용

미군정의 종식을 앞둔 1948년 7월 5일, 제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은 1920년 미군의 전시군법전(Articles of war)을 거의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실제법적인 규정과 절차법적인 규정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그 가공할 위력을 이승만정권기에 와서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다.¹²⁾ 즉 여순사건을 계기로 군에 침투한 좌익세력을 숙청한다는 명분 아래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을 겸했던 이범석은 1949년 3월 18일, 이적행위와 간첩행위를 하여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및 해안경비법 제9조에 위반한 자는 신분을 불문하고 군법회의에서 심리, 처단한다는 방침을 법무부장관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법이론이나 법해석에 문외한인 그 스스로 국방경비법 제32조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¹³⁾ 그러나 법무부장관 이인은 이러한 처사에 대하여 국방부가 ‘법률상 착오와 (법처분) 한계의 혼돈’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방경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처리에 있어서 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제헌헌법 제22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

9, 830면) 참조.

11) 이후로 국가보안법은 1958년 12월 24일, 제3차 개정에서 군정보기관의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조문을 창설하게 되는데 이는 이후 들어선 군사정권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화하면서 다수의 반독재 투쟁 인사들에게 용공세력이나 간첩이라는 조작된 누명을 씌워 마음대로 사형선고와 집행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되었다.

12) 이에 대해서는 최경옥, “미군정법령에 관한 연구: 조선국방경비법과 조선해안경비법의 자료 발굴에 즈음하여”, 『법사학연구』 제29호, 2004, 143-149면 참조.

13) 민간인의 특수범죄에 관한 군법회의 재판 확인에 관한 건(1949.3.18). 대검찰청, 『검찰제요』.

였다. 이에 덧붙여 그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재판권과 관련하여(헌법 제 76조), 국방경비법에 의한 군법회의가 대법원을 최고심으로 하지 않은 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¹⁴⁾ 따라서 법리해석상 국방경비법 가운데 이적죄와 간첩죄규정은 군법 피적용자로 한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헌헌법 제100조에 유효한 현행법령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¹⁵⁾ 그러나 법무부는 더 이상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들 법률의 민간인처벌조항이 현실에서 야기했던 심각한 폐해의 결과를 수수방관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 법률들의 적용실태를 살펴보면 군율이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체제질서를 확립하는 공안규범으로 오용 내지 남용된 빈도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미군정기 사법부장을 역임하고 초대 대법원장의 자리에 오른 김병로조차 국방경비법 제정과정의 문제점과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이 법령에 의한 마녀재판의 폐해를 목도하였으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국가살인이 자행될 대로 자행된 이후의 술화에 불과한 것이다.¹⁷⁾ 비교적 최근에도 국방경비법 등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법원과 법무부는 궁색하게 ‘법률의 추정’이라든지 억지스러운 ‘관습형법’의 논리로 이를 회피한 바 있는데 태생적으로 표출되는 심각한 위헌성의 결함은 결코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¹⁸⁾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불명확성과 양형의 불균형

특히 민간인에 대한 사형선고를 허용했던 두 법률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
- 14) 민간인의 특수범죄에 관한 군법회의 재판 확인에 관한 건(1949.4.27). 대검찰청, 『검찰재요』.
- 15) 정인섭, “대한민국의 수립과 구법령의 승계: 제헌헌법 제100조 관련 관례의 분석”, 『국제관례연구』 제1집, 2000, 314면.
- 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적용자의 93%는 한국전쟁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김득중,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의 법·역사적 접근”, 『아세아연구』 제53권 제4호, 2010, 30면.
- 17) 제2대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회 제87차 회의, 「군법회의재판권의 한계에 관한 증언요구의 건」(1951.5.21), 891면.
- 18) 법률의 추정은 과거 대법원 1999.1.29. 선고, 97누7240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이 답변서의 형식으로 제출한 논리이고, 관습형법적 관점은 대법원 1999.1.29. 선고, 98두16637판결에서 나타난 대법원의 논리였다. 법무부 주장의 모순점과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용환, “관습형법·‘국방경비법’의 인권문제”, 한국인권재단(편), 21세기의 인권II, 2000, 1193~1200면 참조.

불명확할 뿐 아니라 양형에 있어서도 불균형이 나타났는데, 이적행위를 규정한 국방경비법 제32조는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식량,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호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적과 통신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에 대하여, 해안경비법 제8조의2는 “해군 관할지역 내에서 무기, 탄약, 금전, 기타 물자를 직접, 간접으로 적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적 또는 이적을 기도하거나 고의로 적을 은닉 또는 보호한 자”에 대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국방경비법상 이적죄는 제5장 전시범의 세부 구성요건 가운데 하나로 배치되어 있으나 해안경비법상 이적죄는 전시와 평시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간첩죄에 관한 국방경비법 제33조 또한 간첩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하거나 명확하게 규정해 두지 않으면서 법정형은 ‘절대적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안경비법 제9조에서는 전시 또는 최고통치권에 대한 반란이 있는 경우라는 상황적 배경을 설정한 후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간첩으로서 잠입 또는 행동하는 자, 적 또는 반도로부터 유혹적인 문서, 기타 통신을 하거나 지참 또는 적 혹은 반도에게 이를 교부하는 자, 해안경비대원에 대하여 그 직책을 배반하도록 공작하는 자에 대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상대적 사형’에 그치고 있다. 또한 그 적용대상으로서 ‘여하(如何)한 자’라는 구성요건의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미군의 전시군법전에서 간첩죄(제81조)와 이적죄(제82조)를 규정한 구성요건에서 표현된 내용인 ‘누구나(any person)’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와 같은 언어적 표현은 다른 명사에 붙어 그 형편이나 정도가 어떠한가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이 곧 일반인 내지 민간인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에 반하는 위험성이 있다.

아울러 살인 및 강간죄에 대한 국방경비법 제48조와 해안경비법 제10조도 구성요건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가 나타난다. 즉 국방경비법에 따르면 군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살인을 범한 경우 ‘사형, 종신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강간을 범하는 경우는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안경비법은 일률적으로 살인 또는 강간죄를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상과 해상이라는 작전수행지역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범죄행위를 군종(軍種)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3. 형사재판의 특례

1) 단심재판

이승만정권 초기 형사재판의 특징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상소절차가 허용되지 않는 단심에 의한 형벌 부과에 있었다. 즉 개정 국가보안법(1949) 및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에는 이와 같은 위험적 단심처벌조항이 존재하였는데, 개정 국가보안법은 공안사건의 심판을 지방법원 또는 동 지원의 합의부가 단심으로 처리하고(제11조), 개정 법률의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제1심 변론을 종결한 것이 아닌 한 소급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칙 제2조).¹⁹⁾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의 경우 명문으로 단심규정을 두지는 아니하였으나 고등군법회의 자체가 단심에 의한 군사법원이었기 때문에 1954년 개정헌법 제86조의2가 마련될 때까지 상급법원(대법원)에 상소(상고)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재심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는 형의 집행을 명하지 아니한 사건이 판결을 부인 또는 무효로 선언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국방경비법 제100조, 해안경비법 제69조), 무고하게 사형선고 후 집행된 경우의 재심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상황으로 인하여 일면 체제유지 공안규범이나 군사규범 제정의 필요성과 확대적용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단심과 소급처벌을 규정한 것은 제헌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었다.

2) 군법회의

1948년 11월 30일 공포된 국군조직법에는 군법회의의 존재가 명문으로 규정되고, 1949년 11월 24일 공포된 계엄법에도 관련 규정을 두었으며,²⁰⁾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공포된 ‘계엄 하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령(대통령 긴급명령 제5호)’에도 계엄고등군법회의의 설치장관이 판사로 하여금 군법무관의 직무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제헌헌법에는 군사재판기구에 대하여 어떠한 명문의 규정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1949년 4월 21일, 법무장관 이인은 국방부

19) 이와 관련하여 제헌국회 제5회 제56차 앞의 본회의 회의록, 1382~1387면.

20) 당시 계엄법은 비상계엄선포지역에 있어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내란에 관한 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문서위조죄, 간음죄, 살인죄, 상해죄, 협박죄, 절도죄, 횡령죄 등을 범한 사람을 군법회의에서 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관에게 그 위헌성을 제기한 바 있었다.²¹⁾ 그 주된 이유는 현역의 군인이 재판을 행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권리(제헌헌법 제76조)를 침해한 것이라는 데 있었다. 그런데 미군정은 당초 국방경비대가 운영할 군법회의를 ‘순수하게 군사적이거나 해안경비대원의 위반만을 배타적으로 관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²²⁾ 정부수립 후 이승만정권기의 군법회의는 정권에 반대하여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거나 하려는’ 민간인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단죄하는 창구로 전용되었다. 즉 민간법원의 재판과는 그 구조와 성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표면상 다수결에 따라 유무죄 판정 및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군법회의는 그 절차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군인이 대상이 된 경우 또한 사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았거나 증거를 조작하고 사형집행 후 판결을 작성하는 등 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²³⁾

당시의 군법회의는 그 절차에 있어서 국방경비법의 규정에 따라 미군의 군사 재판 형식을 빌려 참십제의 형태로 진행하도록, 특히 고등군법회의에는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법무장교가 심판관으로 참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지만(국방경비법 제54조 제3항, 해안경비법 제20조 제3항), 군법회의가 심판하는 모든 형사사건에 당시 그 인원이 부족했던 법무장교가 모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여건은 군사재판에서 최소한의 적법절차가 지켜지는 것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실질적으로는 법률지식이 전무한 단위부대 지휘관의 의도에 따라 재판이 규문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욱이 군법회의가 설치된 단위부대 지휘관들의 경우 일제식 민강점기의 일본군 복무 경험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던 관계로 이들은 (구) 일본의 군법회의법에 익숙한 편이었다.²⁴⁾ 다시 말해 군법회의의 절차에 대한 규정은 미군 법전의 형식을 따르고 있었으나 이를 운용하는 인적 구성원들은 (구) 일본의 군법회의체계에 익숙해 있었던 관계로 그 적용대상에 미군의 전시군법전

21) 문준영, “미군정 법령체제와 국방경비법”, 『민주법학』 제34호, 2007, 129-130면.

22) Arrest of Korean Constabulary and Korean Coast Guard Personnel by National Police(1948.8.10), RG 338,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1949-53, Box1. 김득중 앞의 논문, 26면 주22) 재인용.

23)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쟁 당시 국방경비법상 ‘적전비행(敵前非行) 및 무기문란죄’로 즉결 처형된 허지홍의 재심청구사건(수원지법 성남지원 2003.12.3. 선고, 2003제고합1판결) 참조.

24) 일본이 군법회의를 도입하고 군법회의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서는 山本政雄, “旧陸海軍軍法會議法の制定経緯-立法過程から見た同法の本質に関する一考察”, 『防衛研究所 紀要』 第9巻第2号, 防衛省 防衛研究所, 2006.12., 45頁 이하 참조.

이 일반 시민에 대한 재판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었던 반면(제20조: Any other person who by the law is subject to trial by military tribunals), (구)일본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군의 지휘관들은 (구)일본 군법회의법에 따라 합위지경(合圍地境)에서라면 군인은 물론이고 常人(일반시민)의 범죄에 대한 관할권(제4조)을 가지고, 계엄령에 근거한 특별재판권(제5조), 전시, 사변에 직면하여 군의 안녕을 보지하기 위한 관할권(제6조)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재판의 형식은 미군의 것이었으나 절차의 실질적 측면은 (구)일본의 제도를 답습했던 결과로 계엄법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직면한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에서 (구)일본의 계엄령(1882)을 차용하는 과정과 결합하면서 군법이 군율이 아닌 체제유지규범의 일환으로 작동하는 것을 용인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이승만정권 초기의 군법회의는 이와 같이 미군의 규범에 근거하였으나 그 실제 운용은 일본식 제도에 흡사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시사해 주는 바는 민간인에게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군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지만 최소한 미군에 의하여 시행되던 군법회의의 방식이라도 고수했다라면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에서와 같은 민간인에 대한 대량의 사형선고는 회피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3) 사형판결에 대한 사후적 조치

당시 군법회의는 단심으로 처리되었고 상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판결 선고 후 집행에 이르기 전 군법회의 설치장관(단위부대 지휘관)이 고등군법회의의 소송기록을 소속 법무심사관에게 심사하도록 하여 이를 승인하는 것이었다(국방경비법 제94조). 이와 같은 판결의 승인권한은 무제한적인 변경권한을 의미하는데(국방경비법 제95조) 군법회의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일반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종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군법회의에서의 판결은 하나의 ‘군사법적 건의’를 하는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승인된 판결은 다시 해당 판결의 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수석의 ‘확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사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었고(국방경비법 제96조), 최종적으로는 심사장관의 결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판결의 심사는 봉쇄된 상소심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었다(국방경비법 제99조).²⁵⁾ 그러나 이승만정권 초기의 사형이 집행된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과연 사형판결에 대한 사후적 조치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4. 사형선고 및 집행의 규모

정부수립 이후 제정·공포된 관보 편찬규정(총리령 제2호) 제8조에 따르면 관보의 ‘회보(彙報)’에는 중요판결과 사형집행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으나,²⁶⁾ 이승만정권기 이와 같은 내용이 관보에 게재된 사실은 전무하다. 따라서 당시의 사형집행통계는 현재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사형집행기록을 개별적으로 열람하여 확인하여 집계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상은 두 종류로 존재한다. 첫째, 민간법원의 사형판결에 따른 형집행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서 생산한 ‘형집행관리(참조코드 AG81/S9)’ 공문서 163권 가운데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사형집행에 관한 질’과 ‘집행원부’ 등이 있다.²⁷⁾ 둘째, 군법회의의 사형판결에 따른 형집행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생산기관으로 되어 있는 13권의 ‘사형집행(참조코드 AG31/S13)’ 공문서철이 존재하지만 이승만정권의 초기는 물론 재임기간 전체의 관련기록은 행방이 묘연하다.

25) 고석, 한국 군사재판 제도의 성립과 개편과정에 관한 연구: 국방경비법에서 군법회의법 제정시까지,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6, 127면 이하 참조.

26) 대한민국 관보 제13호 1948년 11월 15일자.

27) 전자의 경우는 검찰에 보낸 사형집행명령으로 사형집행대상자의 사형집행기록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기록번호, 형명, 판결확정, 선고법원, 주임검사, 재감교도소, 구신, 사형확정카드번호, 피고인의 본적, 주거,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죄명이 기재되어 있다. 검찰이 작성한 ‘사형판결확정보고’는 법무부, 교도소 등에 통지되며, 증빙기록으로 호적등본 및 주거표 사본 송부 공문, 판결문 증본, 호적등본, 사형확정수에 대한 재심현황 등의 보고, 재심상황표, 사형집행촉탁, 사형집행명령서 등 사형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기록이 편철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는 진행번호, 기록번호, 주임검사, 피고자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죄명, 재판 또는 처분(법원 또는 검찰청, 연월일, 형명 등), 상소(제기일, 취하일, 포기일), 재판확정일, 지휘일, 촉탁(년월일, 수탁청 및 재판집행 촉탁부번호), 기타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표1> 국가기록원 소장 집행원부

구분	참조코드	관련 군/계열	생산시기	전체수량	이승만정권기
1	AG86/S7	서울고검>형집행관리	1949~1993	128권	11권
2	AG86-1/S10	서울남부지검>형집행관리	1971~1997	134권	-
3	AG86-2/S8	서울동부지검>형집행관리	1971~1996	89권	-
4	AG86-3/S7	서울북부지검>형집행관리	1974~1997	72권	-
5	AG86-4/S9	서울서부지검>형집행관리	1989~2001	41권	-
6	AG86-5/S10	서울중앙지검>형집행관리	1953~1997	379권	24권
7	AG86-6/S10	수원지검>형집행관리	1950~2001	329권	13권
8	AG86-7/S10	의정부지검>형집행관리	1959~1996	186권	1권
9	AG86-8/S10	인천지검>형집행관리	1949~1997	441권	16권
10	AG86-9/S10	춘천지검>형집행관리	1950~1999	551권	48권
11	AG82/S8	광주고검>형집행관리	1953~1997	64권	9권
12	AG82-1/S9	광주지검>형집행관리	1945~1998	636권	74권
13	AG82-2/S10	전주지검>형집행관리	1946~1998	640권	82권
14	AG82-3/S9	제주지검>형집행관리	1946~1986	67권	14권
15	AG83/S7	대구고검>형집행관리	1949~1997	153권	30권
16	AG83-1/S10	대구지검>형집행관리	1946~2002	1,327권	198권
17	AG84/S6	대전고검>형집행관리	1993~1997	17권	-
18	AG84-1/S10	대전지검>형집행관리	1946~2005	757권	119권
19	AG84-2/S10	청주지검>형집행관리	1946~1998	473권	33권
20	AG85/S7	부산고검>형집행관리	1987~1994	17권	-
21	AG85-1/S10	부산지검>형집행관리	1946~1998	925권	88권
22	AG85-2/S10	울산지검>형집행관리	1982~1998	185권	-
23	AG85-3/S10	창원지검>형집행관리	1946~2004	597권	56권
합 계				8,231권	816권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실은 앞의 <표1>과 같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보관되어 있는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별 집행원부 8,231권 가운데 제1공화국시기에 생산된 816권의 기록 속에 사형집행 관련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이 기록들은 아직 완전 분류가 되지 아니한 채로 국가기록원의 각 서고별(대전, 성남, 부산, 광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데, 학술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접근이 어려운 형편이다.²⁸⁾ 이들 기록에 대한 접근과 분석이 자유롭게 가능해진다면 이승만정권 초기의 객관적인 사형선고와 집행통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사형선고와 집행의 실증적 관찰이 어렵지만 개괄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는 장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III. 정부수립 직후 비상사태와 사형제도

1. 제주4.3사건의 사법처리와 사형제도

1) 민간법원에 의한 사법처리

1948년 4월 3일, 제주지역에서 촉발한 경찰과 무장폭도 사이의 충돌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을 만큼 복잡하고도 어려운 정치적 상황이 전제되어 있었다. 그 후폭풍으로 이어진 유혈을 동반한 봉기와 진압과정에서는 수많은 양민들이 희생당하는 처참한 결과가 빚어졌다. 그러나 무장폭도에 대하여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이뤄진 최초의 사법처리 결과는 아직 미군정 치하에 있었던 관계로 포고령 제2호가 적용되었으나 사형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지역의 법조인원만으로는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어려워지자 군정 당국은 재판관과 검찰관들을 제주로 파견하였으나 이들은 사건을 모두 처리하지 못한 채로 귀경하게 되는데, 재판관 등은 귀경보고에서 주변 압력과 신변상 위협으로 제주도에서의 재판이 어려웠음을 전하고 재판의 이송을 건의하자, 군정청은 사건들을 광주지법으로 이관·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²⁹⁾

이후로 군정은 종식되었으나 사태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던 까닭에 관련자 색출과 처벌의 주체는 이승만정권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정부수립 후인 10월 1일부터 광주로 관련 피고인 131명이 이송되고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지만 이 과정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단지 1명에 불과했는데, 이와 같이 대량 사형선고를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기소시점이 계엄선포 이전이었기 때문이었다.³⁰⁾

28)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이행청구[행정자치부 00-00747, 2000.3.20, 국가기록원] 재결요지 참조

29) RG 407: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Entry 368, Box 2006, NARA.

2) 군법회의에 의한 사법학살

(1) 1948년 제1차 군법회의

사태가 다소 진정되는 국면에 접어들자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이 부대의 지휘관에게는 ‘숙청행동간 고등군법회의 관할권한’이 부여되었다. 이후 제주 전역에 선포된 계엄령에 따라 연말까지 중산간지역의 다수 주민들은 무장폭도와 연계되어 있다는 가정 아래 즉결처분으로 무더기로 학살에 처해지게 된다.³¹⁾ 집단학살을 모면했다라도 주민들은 군부대에 체포되어 임시로 수용소에 수감된 다음 조사를 받았는데,³²⁾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383명을 생포한 제9연대는 그 일부만을 제주와 광주지법에 넘겼다.³³⁾

따라서 미결 구금되었거나 이후 체포된 사람들은 거의 제1차 군법회의에 회부되는데, 이 군법회의는 12월 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서 개최되었고, 그 명목은 ‘계엄고등군법회의’였다.³⁴⁾ 유죄판결이 선고된 871명의 민간인 전원에게는 일률적으로 (구)형법 제77조(내란죄)가 적용되었으며,³⁵⁾ 원래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100명이었으나, 형 확정단계에서 62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 조치하여 문서상 1948년 제1차 군법회의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39명(4.4%)이었다. 그러나 제1차 군법회의에서 사형이 선고된 후 집행된 이들은 계엄 상황만 아니었다면 민간법원에 기소되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 사형만은 피할 수 있었다. 제헌헌법은 대통령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그에 대한 내용은 법률에 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고(제64

30) 계엄이 해제된 후 제주지법에서 다시 민간재판이 재개되는데, 4.3사건의 사법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민간재판 실시에 대한 자료는 제주4.3사건위원회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입수한 판결문들을 분류한 것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총 599명의 피고인 가운데 361명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사형은 1명뿐이었다.

3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1097, April 1, 1949.

32)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964, October 16, 1948.

33)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4. NARA.

34) 주한미대사관은 체포된 죄의분자 96명이 1948년 제1차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23명은 적을 도와주고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경비대원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보낸 1949년 1월 7일의 급송문서 제11호의 첨부문서 제1호 참조

35)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설치명령(단기4281년 12월 1일부 특명 제29호 및 단기4281년 12월 25일부 동 수정명령 제39호).

조), 이에 따라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헌헌법 100조를 근거로 (구)일본 계엄령의 적용을 정당화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³⁶⁾

(2) 1949년 제2차 군법회의

4.3사건의 제2차 군법회의는 1949년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모두 10차례 개최되었으며, 그 명목은 ‘평시고등군법회의’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계엄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민간인 1,659명 전원에게 국방경비법 제32조와 제33조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가 적용되었고,³⁷⁾ 그 결과로 345명(20.8%)에 대하여 무더기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6월 28일에 200명, 6월 29일에 132명, 6월 30일에 13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단지 하루씩 형식적으로 진행된 공판을 통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과 반증이란 명목에 불과하였으며,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에게는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최소한의 자기방어에 대한 기회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 가운데 249명은 10월 2일자 대통령의 집행 재가에 따라 집단 총살되었고,³⁸⁾ 나머지 96명은 고등군법회의 설치장관의 확인과 재심과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서울의 마포형무소로 이송되었다. 제2차 군법회의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도 주로 중산간지역에 거주하던 15세 이상 청장년층으로 이들은 어느 일방의 동조세력이라기 보다 단지 생명을 보전하고자 한라산에 피신했다가 군의 선무활동을 믿고 하산하였으나 이들은 예외 없이 ‘반도’ 또는 ‘폭

36) 이와 관련하여 김순태, “제주4.3민중항쟁 당시 계엄에 관한 고찰-계엄의 법적 근거 유무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14호, 1998, 257면; 백운철, “계엄법에 관한 연구-일제의 계엄령과 건국 초기의 계엄법-”, 『단국법학』 제33권제1호, 2009, 100면 이하 각 참조; 일본은 프랑스의 국가긴급법을 참조하여 계엄을 임전지경(정도 덜 심각한 긴급상태, 전쟁상태)과 합위지경(정도가 심각한 긴급상태, 합위상태)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자의 경우는 지방행정사무 및 사법사무 가운데 군사에 관한 사건에 한하여, 후자의 경우는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도록 하였다. 특히 합위지경에서는 군사에 관한 민사사건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특정범죄에 관하여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상철, “계엄법에 관한 문제점 고찰”, 『안암법학』 제12호, 2001, 31면.

37) 당시 국방경비법 적용의 이유는 더 많은 민간인을 신속하고 가혹하게 약식으로 처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재승, 국가범죄, 2010, 341, 349면.

3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192, October 6, 1949.

도'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3) 문제점

4.3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된 민간인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들에게는 형사소송법은 물론 국방경비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허용되지 않았다. 더욱이 군법회의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기소장, 증인진술서, 예심조사보고서, 공판조서, 재판조서(판결문) 등 관련 소송기록의 일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군법회의 자체가 개최되었는지 여부에도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³⁹⁾ 특히 사형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문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두 차례 군법회의에 의한 사형집행이 사법절차를 가장한 학살에 지나지 아니함을 여실히 증명하는 부분이다.⁴⁰⁾ 아울러 경찰이 작성한 문건에는 군법회의를 담당할 군 당국이 예심과 심리를 진행했다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어 적법한 기소절차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⁴¹⁾ 따라서 군법회의에서 모두 384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288명을 집행한 사실은 결국 집단학살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⁴²⁾

더불어 9월 27일 제정되어 당일로 효력이 발생한 '감형령(대통령령 제7호)'에 따르면 이날 이전까지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 전, 집행유예 중, 집행 중, 집행정지 중 또는 가출옥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형을 감

39) 교석, 앞의 논문, 145면.

40) 이러한 사실은 당시 군법회의가 취급한 각 소송사건의 재판조서를 작성 보존해야 한다는 국방경비법 제81조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41) 제주경찰국 특별수사대가 1949년 6월 6일부터 8월 3일까지 포로 및 귀순자 1,021명을 제 2연대에 송치하면서 작성한 비밀문건인 '죄수상황보고서'에는 군법회의 대상자들의 처치 등급을 A, B, C, D, 갑, 을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1949년 6월 5일, 모슬포경찰서장이 제주경찰국장에게 보낸 비밀문건에는 "기록 A는 사형, B는 무기 의견"이라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송치시점이 1949년 군법회의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예심조사도 없었고 당시 군사재판의 구조와 성격을 미루어 볼 때 경찰의 송치의견이 곧바로 기소장이 되고 판결문의 내용으로 둔갑해 버렸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42) 1949년 제2차 군법회의의 결과, 249명을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처형했다고는 하나,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대통령재가문서철'에는 해당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제헌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副署)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사형집행의 근거문서를 남겨 두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점도 군법회의에 의한 사형집행이 격식을 갖춘 즉결처분임을 반증한다.

경하도록 되어 있었고,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제2조), 설령 제2차 군법회의가 실존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감형하지 않고 처형한 것은 그 자체가 위법행위가 된다.

3) 국방경비대원에 대한 즉결처분

1948년 6월 18일, 제주 주둔 제9연대의 연대장 박진경이 살해되자 이에 연루된 9명의 경비대원이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되는데, 이들에게는 8월 14일, 국방경비법의 전신인 조선경비법(1946) 제35조(살인)가 적용되어 이 가운데 4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⁴³⁾ 아울러 8월 3일에는 제주 관내 경찰서를 습격하고 살인과 방화죄를 저지른 혐의로 3명의 경비대원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 또한 조선경비법이 적용되었다.⁴⁴⁾ 구법이 적용된 이유는 아직 국방경비법이 완전한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위시법주의를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계엄기간인 10월말부터 11월 초 사이에는 제주출신의 제9연대 소속 다수 장병들이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처형되는 사건이 빚어졌다.⁴⁵⁾ 이들은 군조직 내부의 남로당원 및 좌익계열로 분류된 자들인데, 박진경의 후임인 송요찬에 대한 살인 및 무장반란음모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당시 이들에게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국방경비법이 존재했음에도 아무런 사법절차 없이 즉결처분으로 생명을 박탈하였다.⁴⁶⁾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도 군인의 위법행위를 규율하도록 마련되었던 국방경비법이 군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비상사태에서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체제유지규범으로 전용되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43) 동아일보 1948년 8월 15일자; 이들 가운데 감형되지 아니한 2명의 경비대원은 9월 23일에 처형되었다.

44) 조선중앙일보 1948년 8월 8일; 김득중, 앞의 논문, 21면.

45) 최호근, 제노사이드: 학살과 은폐의 역사, 2005, 369면.

4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1967, 444면.

2. 여순사건의 사법처리와 사형제도

1) 계엄령 선포의 불법성

1948년 10월 19일, 여수와 순천지역에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일부 좌익 계 군인들의 주도로 제주4.3사건의 진압동원을 거부하면서 반란이 일어나자 이승만정권은 10월 22일, 이 지역에 계엄을 선포하게 된다.⁴⁷⁾ 그런데 당시의 계엄은 정부수립 후 두 번째로 선포된 것으로,⁴⁸⁾ 설령 그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사법제도를 비롯한 국가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도 아니었으나 제대로 된 수사나 기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로 경찰과 헌병을 동원하여 민간인을 임의적으로 집단 처형하는 근거가 되었다.

적극적인 반란가담행위뿐 아니라 “반도의 소재를 적시 보고하지 않거나 만일 반도를 숨겨주거나 반도와 밀통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 이범석의 계엄령 선포문은 경비대의 반란을 국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였다.⁴⁹⁾ 이튿날에는 이승만이 직접 대국민 경고문을 발표하는 등 처음부터 정권차원에서는 강경한 대응방침을 세우고 있었다.⁵⁰⁾

10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진압작전에 따라 여수·순천지역이 차츰 평정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우익단체가 반란군 이외에도 그에 협력한 민간인 부역자들을 현장에서 ‘손가락총’으로 지목하면,⁵¹⁾ 군기대(헌병)가 재판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즉결 처형을 단행하였다.⁵²⁾ 특히 민간인에 대한 즉결처형의 근거를

47) 여수·순천지역에 대한 10월 22일의 최초 계엄령은 5여단 사령관(김백일)의 명의로 발표되었으나 공식적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계엄령은 10월 25일, 대통령령 제13호로 공포되었다. 이 계엄이 (구)일본의 계엄령에 근거하여 발동된 것이라는 견해로는 조시현, “국가비상사태와 인권”, 21세기의 인권I, 2000, 119면.

48) 당시 법무부장관 이인은 계엄법의 부존재를 인정한 바 있는데, 근거 없이 선포된 계엄령은 그 효력과 시기, 대상에 있어서 정확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국회에서는 어떤 법에 근거하여 계엄이 발표되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계엄의 유효시기와 그 지역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제헌국회 제1회 제92차 국회 속기록, 1948. 10. 30, 706~707면.

49)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다시 쓰는 여순사건보고서, 2012, 161면.

50) 경향신문 1948년 10월 24일자, 1면 참조.

51) 과거사정리위원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6권, 2010, 442면.

52) 김득중, 여순사건과 이승만 반공체제의 구축, 사학박사 학위논문, 2004, 146면 이하 참조;

11월 1일, 전남·북 일대로 확대 실시한 계엄령에 따른 즉결처분권⁵³⁾과 11월 6일, 제8관구 경찰청이 발표한 포고⁵⁴⁾에서 찾으려는 일부 견해도 있으나, 대통령으로부터 수권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정 아래 일개 지역 군사령관이나 경찰 책임자의 포고문이 처형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자 그 자체가 자기모순을 증명하는 것이다.

2) 사형선고와 집행의 실태

(1) 민간인 부역혐의자에 대한 군법회의

현재까지 당시 군법회의의 규모를 정확하게 특정할 근거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계엄지구 군법회의 가운데 1948년 11월, 1개월간 처리된 제1~제4차 군법회의에 대해서는 회부자수 및 양형 등 간략한 사항이 신문 지상을 통하여 알려진 바 있으나<표2>⁵⁵⁾ 이후 계속된 제5~제9차 군법회의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정보는 구할 수 없다.

제1차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는 11월 4일, 광주 모처에서 개최되었는데, 12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후 11월 16일, 집행하였다.⁵⁶⁾ 제2차 고등군법회의는 11월 13~14일, 양일간 순천에서 열렸으며, 순천지역에서 체포된 268명 가운데 10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⁵⁷⁾ 11월 20~21일, 양일간 여수에서 열린 제3차 고등군법회

후일 경찰총수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강점기 일본군 하사관 출신 김종원은 5연대 1대대장으로 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여수지역 부역자 가운데 일부를 일본도로 찌부러워 처형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김병훈, 역사를 왜곡한 한국인, 2006, 257면.

53) 호남방면 군사령관 겸 계엄사령관 원용덕은 이 포고에서 전라남·북도는 계엄지구이므로 사법과 행정 일반에 대하여 자신이 독할(獨轄)한다고 선언하면서 명령을 위반한 자는 군율에 의하여 총살에 즉결한다고 공고하였으나 그 근거가 되는 군율이 무엇인지를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54) 이 포고는 전남·광주지역을 관할하던 제8관구 경찰청장 김병완의 이름으로 발표된 것인데 반란군 폭도 불온불자를 은닉한 자는 물론 신고하지 않은 자, 식사·의류·금품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총살에 처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지역이나 대상에 관하여 구체적인 적시나 관련 법적 근거가 없었다.

55) 그러나 이보다 많은 인원인 691명이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여수, 순천 등 사건 현지뿐만 아니라 계엄사령부가 있었던 광주, 중앙고등군법회의가 설치된 대전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자료가 있다. 김득중, 앞의 논문, 26면.

56) 호남신문 1948년 11월 13일자.

의에서는 11월 19일까지 여수에서 체포된 506명 가운데 208명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⁵⁸⁾ 제4차 고등군법회의는 11월 24~25일, 양일간 순천에서 개최되었으며,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순천지역에서 검거된 혐의자 163명 가운데 73명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⁵⁹⁾ 그러나 제2~제4차 고등군법회의로 사형이 선고된 455명 가운데 실제로 집행된 인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의 고등군법회의를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제2여단 군기대가 협력자 3,000여명을 대전으로 압송하여 대전형무소에 감금하고 취조한 후 11월 30일경 300여명을 사형 집행한 것이다.⁶⁰⁾ 이들 부역혐의자에게는 최초에는 (구) 형법 제77조(내란)와 미군정기의 포고령 제2호(국권변란, 공중치안 질서문란)가 적용되기도 하였으나 그 처리인원이 많아지면서 국방경비법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전술한 제주4.3사건 관련 계엄군법회의의 경우 제주지법에서 개최되었고, 복역 문제와 사형집행기한까지 명시하고 있었으나, 여순사건의 경우는 법원이 아닌 지역 초등학교 등 장소에서 군법회의가 진행되었고, 사형집행방법과 장소 지정 등에서도 불명확하고 모호한 점이 발견된다. 또한 제주4.3사건과 마찬가지로 여순사건의 민간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공판조서 등 소송기록이 일체 발견되지 않아 군사재판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스럽다. 아울러 형식적이거나 사법절차를 밟았으나 가담자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또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표2> 민간인 혐의자에 대한 고등군법회의 재판결과

구분	제1차(광주)	제2차(순천)	제3차(여수)	제4차(순천)	합계
사형	12	102	280	73	467
무기	9	-	-	-	9
20년	11	79	118	48	256
5년	4	79	108	42	233
무죄	12	11	299	40	362

57) 동광신문 1948년 11월 17일자; 제2차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 가운데 44명은 군법회의의 장소 인근의 조곡동 야산에서 11월 29일 총살된 뒤 화장되었다. 김춘수, “여순 사건 당시의 계엄령과 군법회의”, 『제노사이드연구』 제6호, 2009, 149면.

58) 동광신문 1948년 11월 24일자.

59) 동광신문 1948년 11월 27일자.

60) 헌병사편찬위원회, 한국헌병사, 1952, 516~517면.

(2) 반란가담 군인에 대한 군법회의

이와 별도로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대전에서는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가 10차례 개최되어 11월 27일, 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병 417명 가운데 224명에게 사형이 선고된다.⁶¹⁾ 이에 따라 1차로 55명에 대하여 대통령의 확인을 거쳐 사형을 집행하였으며, 이듬해인 1949년 1월 17일에도 69명의 사병이 총살되었다. 사건의 여파로 군 내부에서는 숙군이라는 이름의 좌익색출작업이 진행되는데, 육군 정보국 특별수사과를 설치하여 1949년 7월말까지 이루어진 결과로 고급장교에서 사병에 이르기까지 총 2,817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국방경비법의 적용을 받아 410명이 사형에 처해졌다.⁶²⁾ 이후 1949년 11월 23일까지 누적된 사형선고는 57건이 더 증가하여 467명이었는데,⁶³⁾ 이 과정에서도 증거주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고문을 가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식이었기 때문에 무고한 군인들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⁶⁴⁾

(3) 신속한 사형선고와 잔혹한 처형

여순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민간인과 군인은 공통적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빨리 처형되었다. 당시 주한 미 군사고문단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경비법에 규정된 법무장교의 신분이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한국군 장교들이 오전에 60~70건을 판결하고 오후에는 처형을 감독했다고 하며, 사형의 집행에 있어서도 최초에는 총살형으로 처리하였으나 탄약이 부족할 때에는 집행에 동원된 군인들이 죽창을 사용했다고 한다.⁶⁵⁾

61) 미군 G-2보고서에 따르면 11월 29일까지 50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1,700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이 가운데 866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67명을 집행했다고 한다. HQ USAFIK, G-2 Periodic Report(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주한미군정보일지), 1948.12.4, 632면.

62) 노영기, 육군창설기(1947~1949년)의 숙군에 관한 연구, 사학석사 학위논문, 1997, 36면.

63) 황남준, “전남지방정치와 여수사건”, 해방전후사의 인식3, 2012, 471면 표10 참조; 그러나 또 다른 문헌에서는 여순사건에 가담한 제14연대 소속 군인 가운데 총 1,700여명이 재판을 받았으며, 866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오인환, 리승만: 이승만의 삶과 국가, 2013, 318면.

64) 서울신문 1948년 11월 27일자; 1949년 ‘국방부특명철’에는 군인들에 대한 군법회의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김춘수, 앞의 논문, 130면 주43)참조

65) 김득중, 앞의 논문, 27면.

IV. 맺음말

우리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렸던 제1공화국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도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그 공과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1948년부터 1949년으로 특정되는 시기에 벌어진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이승만정권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 가운데 특히 사법작용의 일환으로 명명할 수 있는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는 그것이 국가작용의 형식을 취한 이상 명백한 해명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특별법과 기념일을 제정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그 진상을 올바르게 규명하고 희생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남북 분단이 예견되었고 대외적으로도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주변 정치상황이 불확실하고 어두웠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당시 이승만정권이 이러한 전제를 법치주의의 파괴와 헌법 유린의 정당한 조건으로 내세우기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⁶⁶⁾

체제를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불과 1년여의 기간 동안 국가가 형벌권을 동원하여 사형에 처한 사람은 제주4.3사건의 경우 두 차례의 군법회의를 통하여 모두 384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후 288명을 집행하였고, 여순사건에 있어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9차의 군법회의에서 최소 467명에서 최대 1,920명에게 사형이 선고된 후 최소 300명을 집행하였으며, 반란가담 군인에 대해서는 10차의 군법회의에서 244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최소 124명을 총살하였다. 여순사건의 여파로 이루어진 군 내부의 숙군작업에서도 최소 467명에서 최대 866명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생독립국가로써 국정이 혼란하고 정세의 불안정을 이유로 시대상황이나 정치논리에 따라 이와 같은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제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규범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설령 그와 같은 전제에 따라 국가형벌권이 발동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승만정권 초기 대량의 사형선고와 그에 근거한 집행이 있었지만 그것

66) 사형제도 폐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특히 위헌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호노,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제47권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596-602면 참조.

은 실제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 모두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첫째, 실제적 측면에서 이 시기 두 차례 계엄령(여순사건의 경우 1948년 10월 22일 이후, 제주4.3사건의 경우 1948년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 선포되었지만 그 전제가 되는 계엄법은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형선고의 남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던 국방경비법 또한 그 제정 사실의 불확실성에 따라 이에 근거한 사형선고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남긴다. 더불어 여순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제정된 국가보안법 또한 그 내용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적용과정에서의 편파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절차적 측면에서는 민간인을 군법회의에서 심판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한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물론이고 증거재판주의나 심급제도의 원칙을 무너뜨렸다. 이에 대해서는 재판의 신속이라는 공색한 논리가 동원되었으나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의 경우 특히 군법회의에서 심리된 사건은 재판조서, 공판조서 등 관련 소송기록조차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승만정권 초기의 사형제도는 그 선고와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국가작용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그 자체가 국가폭력에 지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법무부가 역대 정권의 사형집행통계에 이 시기의 사형 가운데 당시 비사법기구인 군법회의에 의한 것을 제외한 정확한 의도는 파악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의 이름 아래 그것이 판결의 형식을 빌려 취해진 행위였다고 한다면 응당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생명권 박탈조치였다는 점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사형집행 또한 당연히 이승만정권의 사형집행통계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정당한 평가와 매듭은 여전히 그와 같은 행위의 주체였던 국가가 해결해야 할 숙원(宿怨)의 과제로 남는 것이다.

<부록>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 발생 이전까지의 사형관련 신문보도

성명	사형 확정일	사형집행일	비고	일간지명
박남호	48.10.19.		제주4.3사건 관련자: 검사 각 사형구형, 광주지방심리원은 박남호 무기징역, 박성선 무죄선고	동아 48.10.19.
박성선				
김옥태	48.11.06.	48.11.15.1)	여순사건 제1차 계엄고등군법회의 ²⁾ (전월을 11.15. 광주 지산면 계금산 산록에서 공개 집행.)	동아 48.11.19.
김용구				
강공채				
정노채				
오재우				
김유섭				
김양호				
박복석				
신관우				
김동혁				
정기태				
이동환				
신원미상	48.11.13-14.		여순사건 제2차 계엄고등군법회의 (순천지역) 102명 사형선고	동아 48.11.18.
신원미상	48.11.23.		여순사건 관련 사형확정자 8명 사형집행	
신원미상	48.11.00.		여순사건 관련 사형확정자 10명 사형집행	
신원미상	48.11.22.		여순사건 제3차 계엄고등군법회의 (여수지역) 224명 사형선고	경향 48.11.27.
신원미상	48.11.27.		여순사건 관련 국방경비대원 55명 사형집행	동아 48.11.30.
신원미상	48.11.23-24.		여순사건 제4차 계엄고등군법회의 (순천지역) 73명 사형선고	동아 48.11.30.
황규환	48.12.02.	49.01.25.	대구 제6연대 반란사건 관련자 고등군법회의	자유신문 49.01.29.
권재봉				
박덕문				
이위상				
최○홍				
박인규				
양성홍	48.12.27.		광주지방심리원(제주4.3사건)	동아 48.12.29.
기덕범	48.12.24.		광주지방심리원(나주 인민유격대사건)	동아 48.12.30.
김중식			광주지방심리원(화순폭도사건)	
문상웅	49.04.11.		사찰계 출신 형사에 의한 살인강도	동아 49.04.14.

최봉수					
최남근	49.02.13.	49.05.26.	군인	여순사건 (국방경비법 제9조, 제18조, 제19조)	동광 49.05.29.
이재복			민간인		
김정복		49.06.02.	해군경비선 302호정 월북기도사건		조선중앙 49.06.17.
서문걸					
강학철					
김영례	49.04.25.	49.07.10.	여성인 한센병자가 미신을 맹신하여 5세 남자 어린이 유괴살해 및 사체훼손		동아 49.07.21.
이용운	49.09.27.	사형확정	김호익 경감 살해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군법회의	경향 49.10.02.
조경순		9.30. 감형	지리산지구 반도문화공작대		
유진오		9.30. 감형	지리산지구 반도문화공작대 대장		
홍순학		9.30. 감형	공작대원 영맹원(映盟員)		
유호진		9.30. 감형	공작대원 음맹원(音盟員)		
이용환		9.30. 감형	공작대원		
박우용		9.30. 감형	공작대원		
이원장		9.30. 감형	공작대원		
김태준		사형확정	남로당 문화부장 특수정보책임자		
박원석	49.10.13.		유격대조직 파주군 광탄면 지서 습격미수		경향 49.11.04.
김석준	49.10.20.		서울지방법원(언더우드박사 부인 살해) 국가보안법, 폭발물취체법 위반, 살인		동아 49.10.22
배경환					
장현수					
경우수					
			10.21. 검찰통계: 해방 후 남한 사형집행 31명 미군정기 28명, 정부수립 후 3명 서울고검: 살인 6명, 강도살인 9명 대구고검: 살인 3명, 강도살인 13명		자유신문 49.10.23.
			법무부 장관 권승렬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제외한 사형집행자는 3명에 불과하다고 밝힘. (한센병 여인, 순경에 의한 살인, 제주도에서 6명의 양민을 살해한 사건).		동아 49.12.09.
반석근	49.11.20.		애국청년동지회 수괴		동아 49.12.04.
장경식	50.01.20.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방화사건(방화죄 및 국가보안법)] ³⁾		동아 49.11.28.
채정생	50.02.03.		광주지방법원 [제주4.3사건(인민군 제4지구 총무부원)]		동아 50.02.11.
최경식	50.03.04.		마차꾼 살해 후 사체유기(강도살인)		동아 50.03.04.
이영식	50.03.15.		48년 12월 충북 영동 인민유격대사건		서울 50.03.17.
홍재부					

고병선	50.03.09.		서울지방법원(민보단원 살해 민애청원)	동아 50.03.16.
임묘택				
홍봉선				
전홍수				
김복남	50.04.04.		영산포 살인강도사건(가족 5명 살해)	동아 50.04.08.
황두옥				
박동남				
유창근	50.04.21.		서울 흥릉 어린이유괴살인사건	경향 50.04.21.
박정복	50.05.09.		박일원 총경 살해사건 (국가보안법, 살인, 살인미수)	경향 50.05.11.
박철성				
김대성				
이장수	50.05.21.		영등포 전화중계소 방화범 (경찰관 2명, 직원 1명 살해)	경향 50.05.21.
이경래				
정준수				
정해영				
최윤정 (여)	50.06.15.		고등법원(본부살해범)	동아 50.06.17.
윤수학				
김수임 (여)	50.06.16.		중앙고등군법회의 간첩죄(국방경비법 제22조, 제32조)	경향 50.06.18.

- 1) 이 집행 이전에 국회조사위원단이 1948년 10월 30일 순천·여수·광양 현지를 시찰하고 전언한 바에 따르면 반란폭도(특히 중학생들) 중 제1차로 76명에게 총살형을 순천에서 집행하였고, 여수에서도 12명의 폭도에게 사형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는 사법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 즉결처형이었다. 자유신문 1948년 11월 2일자.
- 2) 제1차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계엄지구 법무처 발표 제2호에 따르면 이들 12명은 사형 확정 후 집행하였으나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람이 9명, 사형에서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된 사람이 6명, 사형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된 사람이 1명이었다. 호남신문 1948년 11월 13일자.
- 3) 이 사건의 경우 해당일자의 기사는 기소사실만을 보도하고 있으며, 사형선고 후 확정에 대한 내용은 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 251면.

참고문헌

- 고 석, 한국 군사재판 제도의 성립과 개편과정에 관한 연구: 국방경비법에서 군법회의법 제정시까지,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6.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1967.
- 김득중, 여순사건과 이승만 반공체제의 구축, 성균관대학교 사학박사 학위논문, 2004.
- _____,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의 법-역사적 접근”, 『아세아연구』 제53권 제4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0.
- 김병훈, 역사를 왜곡한 한국인, 반디출판사, 2006.
- 김순태, “제주4.3민중항쟁 당시 계엄에 관한 고찰-계엄의 법적 근거 유무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14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8.
- 김춘수, “여순사건 당시의 계엄령과 군법회의”, 『제노사이드연구』 제6호, 부경역사연구소, 2009.
- 노영기, 육군창설기(1947~1949년)의 숙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석사 학위논문, 1997.
- 문준영, “미군정 법령체제와 국방경비법”, 『민주법학』 제34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7.
-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1, 역사비평사, 2004.
- 변동명, “제1공화국 초기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개정”,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 제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3.
- 백운철, “계엄법에 관한 연구-일제의 계엄령과 건국 초기의 계엄법-”, 『단국법학』 제33권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다시 쓰는 여순사건보고서, 한국학술정보, 2012.
- 오인환, 리승만: 이승만의 삶과 국가, 나남, 2013.
- 유영익, 젊은 날의 이승만: 한성감옥생활(1899-1904)과 옥중잡기 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 이상철, “계엄법에 관한 문제점 고찰”, 『안암법학』 제12호, 안암법학회, 2001.
- 이재승, 국가범죄, 앨피, 2010.
- 정인섭, “대한민국의 수립과 구법령의 승계: 제헌헌법 제100조 관련 판례의 분석”, 『국제판례연구』 제1집, 서울국제법연구회, 2000.

- 주호노,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제47권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6권, 2010.
- 최경옥, “미군정법령에 관한 연구: 조선국방경비법과 조선해안경비법의 자료 발굴에 즈음하여”, 『법사학연구』 제29호, 한국법사학회, 2004.
- 최호근, 제노사이드: 학살과 은폐의 역사, 책세상, 2005.
- 한국인권재단(편), 21세기의 인권I, 한길사, 2000.
- _____, 21세기의 인권II, 한길사, 2000.
- 헌병사편찬위원회, 한국헌병사, 1952.
- 황남준, “전남지방정치와 여수사건”, 해방전후사의 인식3, 한길사, 2012.

Arrest of Korean Constabulary and Korean Coast Guard Personnel by National Police(1948.8.10), RG 338,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1949-53, Box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October 16, 1948, December 4, 1948, April 1, 1949, October 6, 1949.

RG 407: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Entry 368, Box 2006, NARA.

Abstract

An Evaluation of the Operation of the Death Penalty in the early Syngman Rhee Regime* : Focused on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the Yeosu-Suncheon Incident

Lee, Deok-In**

The first president Syngman Rhee hovered between life and death as a political criminal during the Korean Empire era. However, he ruthlessly put citizens to death to suppress those who had opposed or resisted him with no legal procedure, which lasted for nearly 2 years while he was in office as the first president of Korea. Several years ago, the Ministry of Justice released statistics on executions since the founding of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data, there were less executions during Syngman Rhee regime than those of Park Chung-hee regime. However, it probably underestimated and distorted facts. Although Syngman Rhee has generally been referred to as a 'Founding Father,' his actions since the government formation indicates he is a ruler of autocratic police state. In fact, he engaged in judicial murders that were extralegal massacre, based on formal judicial proceedings.

Thus, this study is mainly aimed at exploring how he used the death penalty as a tool to maintain his regime while suppressing the incidents in Jeju on April 3rd and Yeosun, which occurred during the early stage of his regime. To accomplish the objective, elements of crimes leading to the death penalty and special cases of criminal trials for death sentences during the period were explored. When the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during the emergency amid the government formation were examined, it was clear that the death penalty was a tool of suppression and tyranny beyond a punishment.

Keywords: the 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Korean Constabulary, National Security Law, the Court-Martial, Death Penalty in the Jeju April 3 Incident, Death Penalty in the Yeosu-Suncheon Incident.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funded by 2013 government fund(Ministry of Education)[NRF-2013S1A5A2A1017744].

** Prof., LL.D., School of Police Administration, 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